

무역상무연구  
제72권  
2016. 12, pp. 115~137.

논문접수일 2016. 11. 22.  
심사완료일 2016. 12. 16.  
게재확정일 2016. 12. 17.

##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이경령\* · 이승택\*\*

-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관리
  - IV.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사례
  - V. 결론
- 

주제어 :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리스크 관리, 기업자율준수체제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IS(Islamic State)의 민간인 대상 무차별적 테러의 증가 등으로 국제 정치 환경의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략물자의 규제와 이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전략물자 관리 민감성 제고와 국내에서의 관련 법제 강화되는 등 그 중요성이 점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주요 국가들의 전략물자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수출 기업들은 대외무역법에서 금지한 전략물자 불법수출과 관련된 법률적 리스크(legal risk)의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제1저자), E-Mail : kllee@kita.net

\*\* 원광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조교수(교신저자), E-Mail : agio77@wku.ac.kr

수출입에 대한 제한을 받는 품목으로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가리키는 전략물자는 현재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국제수출통제체제<sup>1)</sup>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로 고시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 전략물자인 물품이나 기술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출했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물품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형사 처벌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행정제재로서 수출입 제한, 과태료, 교육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적발된 전략물자의 전부나 일부의 수출입이 3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sup>2)3)</sup>

이에 따라 전략물자 취급 업체는 물론, 지정된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물품 등을 취급하는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 수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legal risk)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취급하는 수출하거나 중개, 해외 운송하는 기업은 전략물자 거래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경영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전략물자 법제도,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기업자율준수, 남북한 경험 등 전략물자 제도 및 정책 측면의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무역 거래시 기업이 당면한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나 이러한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 무역 거래시 기업이 직면하는 전략물자의 무역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고 4장에서는 기업이

1)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5.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2) 대외무역법 제31조.

3) 대외무역법 제2조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대외무역법에 의하면 ‘무역’은 물품부터 용역, 무형의 기술 등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략물자의 경우에도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전자체 매체에 의한 무형의 기술이전까지 통제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이미 이러한 무형 기술이전까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무체물의 무역 거래는 물품의 무역과 매우 상이한 내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에 어떻게 노출되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는 사례 연구를 진행한 후 결론에서 이러한 전략물자 거래 관련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무역 리스크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 논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湯淺壑道에 의하면 리스크 관리에 관해서는 대개 아래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다.<sup>4)</sup>

첫째, 리스크의 정의이다. ISO/IEC는 리스크를 사상의 발생 확률과 사상의 결과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sup>5)6)</sup> 일본의 JISQ도 이 정의를 준용하여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JISQ 2001 지침에 반영하여<sup>7)</sup>, JISQ 2001에서는 리스크에 관해서 조직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조정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8)</sup>

둘째, 리스크 관리의 정의이다. 미국의 트레드웨이 組織 위원회(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에 의하면 리스크 관리란 사업체의 이사회, 경영자나 그 외 구성원에 의해서 실시되는 일련의 행위이며, 전략 설정에 대해 사업체에 횡단적으로 적용되어 사업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사상을 식별해 내고, 리스크 허용 한도(risk appetite) 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여, 사업체의 목적 달성에 합리적 보증을 제공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9)10)</sup>

4) 湯淺壑道(최우용 옮김),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와 법제도”, 2008년 6월 5일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강연회 발표자료.

5)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전기 분야를 제외한 공업 분야의 국제적인 표준인 국제 규격을 책정하기 위한 민간의 비정부 조직으로, 전기 및 전자 기술 분야를 제외한 전산업 분야(광공업, 농업, 의약품등)에 관한 국제 규격의 작성을 실시하고 있어 각국으로부터 1기관을 참가할 수 있다.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ISO와 함께 전기 및 전자 기술 분야의 국제 규격의 작성을 실시하고 있다.

6) ISO/IEC (2002), Guide 73 Risk management .Vocabulary . Guidelines for use in standards.

7) JIS공업 표준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표준화법에 근거해 제정되는 국가 규격이지만, Q는 관리 시스템 분야를 나타내고 있다.

8) JISQ 2001 리스크마네지먼트시스템構築のための指針, 日本規格協會, 2001, p. 2.

9)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adeway Commission)는 부정한 재무보고를 야기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부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985년에 미국에서 미국 공인회계사협회, 미국회계학회, 재무담당경영자협회, 내부 감사인협회, 전국회계인협회에 의

세 번째는 기업 리스크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리스크를 기업 가치의 원천으로서 파악하는 정의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공개한 ‘선진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사업 리스크 관리 실천 텍스트’에서 경산성은 리스크 관리를 수익의 원천으로서 리스크를 파악하고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면서 수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sup>11)</sup>

무역은 두 국가 이상의 격지거래란 특성에 의해 복잡하고 다양한 리스크가 상존한다. 정홍주·송용(2008)은 장거리, 장시간, 국경이동, 문화와 제도의 상이, 통화의 상이 등의 영향으로 인한 무역거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비상위험, 신용위험, 기업위험, 이자율 변동 및 환변동 위험, 신뢰성 상실위험 등으로 거래 관련 리스크를 분류하였다.<sup>12)</sup>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종합상사들의 무역 리스크 관리 사례를 비교 조사하였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 정홍주·성수남·최유미(2012)는 무역리스크 관련 문헌조사를 통하여 무역 리스크를 계약·사기 리스크, 운송(물류)·통관 리스크, 결제·시장 리스크, 제조물책임 리스크로 구분하고 무역리스크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향과 연구 방향성을 제안하였다.<sup>13)</sup>

<표 1> 리스크 상세 구분

구분	주요 연구 주제
계약·사기 리스크	신용장 사기, 수출보험 사기, 인터넷 무역결제 사기
운송(물류)·통관 리스크	해운위험/해운리스크, 항공운송 위험, 항공보험, 국제운송위험, 해상보험, 물류보안 리스크, 전략물자 리스크, 관세리스크
결제·시장 리스크	수출보험, 환위험관리/환리스크관리
제조물책임 리스크	제조물배상책임, 제조물책임

자료 : 정홍주 외 2인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정리.

해서 조직 된 위원회.

- 10) COSO, 八田進二監譯中央青J 抱栢舵 譯, 全社的リスクマネジメントフレ"[ムワ]"ク篇, 東洋經濟季社, 2006, pp. 151~160.
- 11) 經濟産業省, “先進企業から學ぶ事業リスクマネジメント實踐テキスト”, 2005, p. 23.
- 12) 정홍주·송용, “무역업의 리스크관리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8, pp. 167~134.
- 13) 정홍주·성수남·최유미, “무역리스크관리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무역학회지, 제37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2, pp. 69~109.

## 2. 전략물자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테러와의 전쟁으로 무역 거래상 물류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상진(2006)은 무역업계의 업무절차 개선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 강화와 기업들의 전략물자 관련 정보 취득 및 관리의 신속·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sup>14)</sup>

최춘호(2008)는 전략물자의 Global Compliance와 관련하여 정부는 Global 기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가지고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여 수출통제 지원 제도 도입을 노력해야 하고 Global 기업은 기업 내부적인 회계, 구매, 공급망 관리, 통관 부분, 수출 관리 등의 여러 분야에서 Global Compliance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역설하였다.<sup>15)</sup> 오현석·양정호(2009)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운영상 위반 사례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 이후 수출통제 관정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전문가 양성 자율준수제도의 조기 정착을 주장하였다.<sup>16)</sup>

이희용·강현재·김귀옥(2007)은 수출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여기에서 저자는 수출 업체들의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하였다.<sup>17)</sup> 이상옥(2011)도 유사하게 한국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을 연구하였다.<sup>18)</sup>

심상열·소단주·이화(2011)는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와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상황허가(Catch-all)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한일 양국간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를 비교하였다. 저자들은 2011년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반면 한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 
- 14) 이상진,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목표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6, pp. 227~244.  
 15) 최춘호, “전략물자 무역환경에 따른 글로벌기업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pp. 367~389.  
 16) 오현석·양정호,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4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pp. 309~335.  
 17) 이희용·강현재·김귀옥·여택동,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출기업에 대한 조사 분석”, 무역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7, pp. 89~117.  
 18) 이상옥,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pp. 353~375.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sup>19)</sup>

이충배(2011)도 국내에서 소수의 업체만 자율준수제도에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등급제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의 차등화를 통해 무역 업체들의 자율준수제도 참여 유도를 주장하였다.<sup>20)</sup>

위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전략물자 관련 연구는 물류보안 및 전략물자 문제가 부각된 2000년대 전후에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도 주로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후로 자율준수제도의 운영 상황, 업체의 활용도, 다양한 사례 연구 등 후속 연구 진행이 더딘 상태이다. 따라서 오현석·양정호(2009)의 사례 연구 방법을 준용하여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물자의 무역 리스크를 확인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Ⅲ. 전략물자의 무역 리스크 관리

#### 1. 전략물자의 무역 리스크

##### 1) 수출좌절

수출허가를 받으면 전략물자로 지정된 품목도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거래자’로 지정된 수입자나 국제사회의 지목을 받는 ‘우려 국가’로의 수출은 관계 기관에 의해 수출허가나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경우 전략물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경우 반출 승인을 받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자국 부품이 포함된 ‘미국산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 외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도 전략물자제도의 역외 적용(extra territory)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품목은 규제가 더욱 까다로운 미국의 수출허가까지 받아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우려 국가’로의 수출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전략물자 관련 품목의 수출이 좌절된 경우가 여러 건 발생하였다. 특히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광케이블,

19) 심상렬·소단·주이화,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P)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pp. 297~321.

20) 이충배, “전략무역자율준수제도에서의 등급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1. pp. 119~140.

공작기계, 통신장비, 생산·검사용 시험 장비 등도 전략물자에 해당되어 모두 개성공단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으로 대체하거나 문제가 되는 기능의 비전략물자 기술로 대체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해야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전략물자 관리 미비로 인해 최종 수출 단계에서 관계 당국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후 수출이 좌절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였다.

2) 형사 및 행정처벌

전략물자관리원<sup>21)</sup>은 2011~2015년 사이 21,066건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2011년 3,553건에서 2013년 5,814건으로 증가했고, 15년 7월까지 3,70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sup>22)</sup> 이 중 불법수출은 총 182건이 적발되었다. 2011년 21건에서 2013년 68건으로 급증했다가 2014년 51건으로 다소 감소했고, 2015년 7월 현재 14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주로 해경이 담당하다가 해경 해체 후 경찰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단속실적이 줄어 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2> 최근 5년간 전략물자 판정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계
전략물자	3,553	3,196	5,814	4,794	3,709	21,066
불법수출	21	28	68	51	14	182

또한 2015년도에 실제 수출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총 12개사이고 교육명령은 총 1개사에 부과되었다.<sup>23)</sup>

<표 3> 산업부의 수출제한 및 교육명령 부과 현황

(단위: 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제한	1	5	6	1	23	31	12
교육명령	0	11	15	27	45	16	1
계	1	16	21	28	68	47	13

21) 대외무역법 제29조에 의해 1997년에 지식경제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설립됨, 주로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전략물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략물자 관련 교육과 홍보, 국제협력 및 전략물자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www.kosti.or.kr).

22) 부좌현 의원,(보도자료) “전략물자 불법수출 5년간 182건”, <http://blog.daum.net/bjwahyun/5974034>, 2015(검색일: 2016.11.15.)

23)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제한과 교육명령이 병과된 경우에는 수출제한으로 집계, 방사청 처분 실적 미포함 수치이다.

과거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처분을 살펴보면, '03년 1건, '04년 4건, '05년 0건, '06년 4건, '07년 5건, '08년 6건, '09년 상반기 까지 1건 등 '06년 이래로 수출 제한 처분이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08년에는 경찰청의 산업보안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수사가 확대되어 적발 및 처벌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법처벌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면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임직원의 구속, 벌금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회피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와 더불어 행정 처벌로 인한 자사 품목의 수출금지 등 무역 제한 조치는 기업의 매출 감소를 야기하고 수출금지품목이 회사의 주력 제품일 경우 회사 존립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

### 3) 우려거래자 등재로 인한 거래불능

전략물자 관리제도 시행 초기 국내 업체의 불법 수출은 주로 해외 정보기관의 제보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2005년에 중소 무역업체인 A사는 이란 수입 업체의 구매요청으로 중국산 화학약품의 중계무역 추진하였으나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국에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1차),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2차)의 형사 처벌과 추가적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금지 1년(1차), 수출입금지 1년 연장(2차)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미국 국무부 제재 대상인 '이란시리아비확산법'에 의한 '제재자 리스트'에 등재되어 미국 정부 조달계약 참가 금지, 미국 정부지원 수혜 불가, 미국산 무기 및 이중용도품목 수입 불가의 제재 조치를 받아 사실상 미국과의 거래가 단절되었다.

이와 같이 우려거래자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미국 법에 따라 미국 기업은 A사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며 다른 업체들 역시 우려거래자 리스트에 등재된 A사와의 거래를 꺼리게 되어 이 회사는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 4) 외부 환경 변화

전략물자관리 제도가 국제 규범으로 출발함에 따라 국내 제도 역시 전적으로 국제 정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제도뿐만 아니라 수입국에 따라 UN 안보리결의, 국가별 정책에 따른 특정 품목의 거래 금지 등에 의해 해당 기업은 특정 국가로의 수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9·11 테러 이후 주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수출통제 강화가 전개되었다. 이중 미국 주도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2004년 4월 28일 통과시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UNSCR 1540: 이하 “결의 1540호”)가 가장 강도 높은 수출통제체제이다. ‘결의 1540호’는 모든 국가가 WMD 관련 물자의 연구·개발, 생산, 사용, 수송 등 전 단계에 걸쳐 국내통제체제를 구비·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의 핵위협에 의해 UN 안보리는 이미 여러 개의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조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도입 및 여러 차례의 개정을 진행하였고 2004년에는 ‘결의 1540호’에 따라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대폭적인 강화가 있었다.

이러한 법제도의 변경은 아니나 ‘우려거래자’ 리스트나 통제품목의 사양 등이 계속 변경되면서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가부 결정에 이와 같은 변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및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 회원국에서 통보하는 ‘우려거래자’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통제품목 사양 역시 4개 수출 통제 체제의 총회에서 매년 개정되므로 전략물자 수출업체는 기보유 정보에 변경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기존 거래 국가의 국제제재 대상 포함 여부와 신규 거래선의 우려거래자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010년 정부의 ‘對이란 유엔안보리결의(1929호) 이행관련 발표’(‘10.9.8) 및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의 시행(‘10.9.9)으로 국내 다수의 대이란 거래 기업들은 이란 수출을 포기하거나 전략물자와 관련 없는 품목을 수출하고 있다는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겪었으나 2016년 11월 현재에는 이런 제재가 해제된 상태이다.<sup>24)</sup>

이와 같이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는 우리 업체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출 제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최종용도 및 수요자의 확인, 근거 자료 유지 및 담당 인력 확충 등으로 인한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수출 절차의 복잡화로 인한 수출 지연으로 간접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수출증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으나 수출 통제 비용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 수출관리체제의 구축과 이행을 위한 초기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법수출이나 예견하지 못한 수출좌절로 인해 기업 경영에 큰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24) 금지품목 해당여부 확인대상은 전략물자 및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 등과 석유자원개발 관련 행위 및 정유제품 생산·수입 관련 행위 중 재화·기술 등이다. 제재대상자 해당여부 확인대상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10.9.9등)한 ‘금융제재대상자’이다. 2015년부터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되어 가면서 이로 인해 점진적으로 경제제재가 해제되기 시작하여 2016년 1월부터 거의 모든 경제제재가 사라지고 일부 핵관련 전략물자에 대해서만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 2.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관리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는 기업이 취급하는 품목과 수출입 여부, 거래하는 상대방의 개수 등 기업의 거래형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전략물자나 전략물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해외의 불특정 다수 기업과의 거래시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세밀한 전사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반면 고정된 거래선과 소품종을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몇 가지 간단한 업무만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아래 설명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모두 리스크 관리 계획(Plan), 관리 실시(Do), 시스템 확인(Check), 시정(Act)의 순서를 반복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 실시하는 PDCA 사이클을 내재하고 있다. 전략물자 리스크 관리도 리스크의 대상인 전략물자나 확산 관련 해외 거래를 확인하고 이의 실무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적 실무 장치를 마련한 후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사나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확인해 나가는 전사적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관리 범위는 사내에 관리할 위험의 대상인 전략물자를 수출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의 거래시 거래 상대방이 사용할 최종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마다 언제, 어떤 담당자에게 어떤 업무를 통해서 관련 의사 결정시에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는 정형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단순히 정형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래 제시된 제도들은 기업 운영에서 전략물자의 무역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인제도로써 개별 기업의 전략물자 무역 관리 리스크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1) 기업 자율준수체제(CP)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me: CP)는 기업이 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거래심사, 교육, 감사 등의 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허가 신청 등을 자율적으로 수출 통제를 이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준수체제 운영을 공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기준으로 158개의 자율준수체제를 갖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sup>25)</sup>로

25) 대외무역법 제25조에 의거, 자율준수체제를 시행하는 업체의 신청 하에 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써 업체가 수출관리 능력(전략물자판정능력,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능력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신청하고,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 구축은 법규위반에 따른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의 예방차원 뿐만 아니라 적절한 전략물자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와, 이러한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과의 사업 기회 발굴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기업이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출관리조직 및 규정, 최고경영자의 준수 의지, 수출거래심사, 출하관리, 교육, 감사, 문서관리,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 정보보안관리 등의 필수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 기업의 사내 자율준수체제가 필수운영 요소를 구비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이를 선택형 CP로 개편하여 A, AA, AAA의 3개 등급<sup>26)</sup>으로 분화하고 이행점검, 지정 취소 등 제도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2)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제도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의 이름이다. 9.11 사태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sup>27)</sup>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했으며,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sup>28)</sup>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초기 유럽연합(EU)에서 실시하는 민관협력제도 ‘AEO’는 현재 전 세계 각국 관세당국이 실시하는 유사한 민관협력제도를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다.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시행중인 제도가 ‘종합인증 우수업체’제도이다.

AEO 공인기준은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법규준수도는 관세청장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② 내부통제시스템은 법규준수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산업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 및 등급을 결정.

- 26) 기업의 규모(대/중소) 및 업종(제조/상사)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3단계(A, AA, AAA)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불법수출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 발생 시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가능.
- 27) WCO SAFE Framework의 정의에 의하면 “AEO는 국제 무역공급망과 관련된 WCO 규정을 준수하면서 소속세관 당국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국제적 이동에 종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AEO에는 제조자, 수입자, 수출자, 관세사, 운송인, 운송주선업자, 중계인, 항구 및 공항, 터미널운영인, 창고업자, 배송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 28) 인증 대상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선사, 항공사, 관세사,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등 9개 범주의 사업자이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체제로서 AEO 고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여야 하고 체납이 없어야 하며,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00% 이내이거나 투자적격 업체이어야 한다. ④ 안전 관리는 모두 8개 기준이 있으며, 거래업체, 운송수단 등 관리, 출입통제, 인사관리, 취급절차관리, 시설과 장비 관리, 정보 기술 관리, 교육과 훈련의 각 분야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sup>29)</sup>

전략물자에 관련된 수출기업이 AEO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를 기업의 주요 위험요소로 정의하고 이를 고려한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실제적으로 AEO 인증을 위한 관세청의 ‘수출기업’의 법규준수 항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략물자 부정수출 또는 중개 행위에 의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인증이 가능하다.

공인등급은 법규준수도가 차이를 고려하여 등급화하고 있으며, 기본요건은 재무 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평가 점수가 우수해야 하며, 공인절차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실시 후 공인기준 충족업체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규준수도에 따라 A, AA등급 인증서를 교부하고, AAA등급은 종합심사 결과를 기초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AEO 공인기업에 대한 혜택은 특례사항에 따라 AEO 등급별로 차등화 또는 공통 적용하고 주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하는 것이며, 그 외 서류제출, 수출입 관련 신고항목의 정정, 감면 또는 용도세율 물품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 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AEO 제도는 그간 물류주체별로 단편적 성실기준을 마련하여 선별적으로 통관 절차의 혜택을 부여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과 안전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물류주체 기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세관의 일방적 통제에 의한 관리(Enforced Compliance)방식에서, 세관과 업체의 협력을 통해 업체 스스로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관리(Informed Compliance)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으로서 관세 행정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sup>30)</sup>

29) 관세청,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기업의 필수조건! AEO”, 2009.

30) 상계자료.

### 3) 물류보안경영시스템(ISO28000) 제도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7년부터 제조업을 포함하여 육상운송 해상운송 및 항만하역 등 물류전반에 걸쳐 각종 물류보안 규정에 적합한 물류보안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우리도 2008년 기술표준원에서 물류보안 경영시스템(ISO28000, 국내에서는 KS V ISO 28000)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 기관으로 (사)한국선급을 인정하였다.<sup>31)</sup> 이는 다양한 국가의 물류보안제도를 수용·준수하는 보안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보안상태가 유지되는 기업임을 인증 받는 제도로 생산자로부터 운송, 보관 업자 등을 포함하는 공급사슬내의 모든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물류보안경영시스템의 구축을 원하는 기업은 국제표준에 따라 물류보안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통해 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유지하여야 한다.<sup>32)</sup>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보안경영방침, 2. 보안위험성 평가 및 기획, 3. 실행 및 운영, 4. 점검 및 시정조치, 5. 경영검토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해 발전하는 시스템의 형태로서 2번 항은 세부적으로 리스크 평가, 규정 요구사항, 보안목표 및 세부 목표, 보안경영 프로그램을 3번은 실행 및 운영에서는 책임 및 적격성, 의사소통, 문서화, 문서 및 데이터 관리, 운영 관리, 비상시 대비, 4번 점검 및 시정조치에는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평가, 부적합사항 그리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기록관리, 심사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 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법률, 규정 및 강제 요구사항의 범주에 전략물자관리 제도를 추가하고,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를 보안 위험성 평가 시 반영하게 되면 ISO28000 도입 기업은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IV.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사례

### 1. 수출좌절

전략물자 무역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아 수출 최종 단계에서 대상 물품이 전략물자로 판명되고 거래 상대방이 이러한 전략물자를 거래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 확인

31) (사)한국선급은 2011년에 이어 2014년에도 재인증 받음.

32)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물류보안인증으로 무역장벽 낮춘다”, 2008.5.7(검색일: 2016.11.18.)

될 경우, 수출업체는 수출과절로 인해 최악의 손실을 볼 수 있다.

대개 수출국이 이란 등과 같은 우려국가이거나 국제 분쟁지역, 북한 등으로 재반입이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대상국 자체가 불안한 경우에서 대량살상무기나 테러관련이 의심스러운 거래 상대방까지 전략물자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려거래자’를 지정하여 이들과의 전략물자 거래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본 목록은 대상자의 정보가 불완전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는 수출허가시마다 현재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하여 물품과 거래 상대방을 함께 연관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완전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란 핵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제재에 동참하면서 전략물자는 물론 이란의 석유, 정유관련 개발 설비, 이후 자동차와 선박 부품까지 이란에 대해서 주요 산업용 물자를 수출통제 하였다. 당시 많은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중동의 자동차 생산 대국인 이란과 거래를 활발히 진행 중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된 무역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채 이란과 무역 거래를 하고 있었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시행되었으나 자동차 부품 수출을 적시에 중단하지 못하였다.

이란 경제제재를 위한 자동차부품 거래 중단과 같은 무역 제재는 대외무역법에 의하면 불법수출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미국 및 우리나라의 규제에 의해 대금결제 막혀 수출물품에 대한 대금회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국내 자동차 관련 대기업의 경우에는 평소 국제정세와 정부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고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관리를 통해 이란과의 거래를 이란 경제 제재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큰 무리 없이 바로 적응하여 경영상의 차질을 겪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패러글라이더 전문 생산기업으로 ‘100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30%로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 B사는 지난 2005년 11월에 사업승인을 받고 개성공단 1차 단지 분양을 통해 개성공단에 입주하였다. 2007년에 B사는 패러글라이더 생산 원자재인 산줄을 반출하였으나 그 소재 중 아라미드는 정부기관에 의해 전략물자로 판명, 적발되어 모두 반입조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B사는 결국 아라미드섬유를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을 포기해야 했고 아라미드섬유 제품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개성공장에서는 다른 원단을 반출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야 했다.<sup>33)</sup>

33) 서현희, “남북경협에서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북한대학교 대학원, 2010, pp. 52~53.

B사는 의도적으로 불법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수출을 하게 되었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B사 수출의 80%를 차지하던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서 수출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평소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전략 물자 여부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으로 발생한 손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 2. 불법행위 처벌

### 1) 국내

전략물자를 정부의 허가 없이 해외로 무단 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로 기업 대표에게 징역은 물론 업무 담당자까지 대외무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sup>34)</sup> 동법은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와 기업 대표를 함께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징역으로 인한 공백은 물론 기업 이미지 실추까지 이어진다. 또한 동반되는 벌금형과 관련 전략물자의 수출금지라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 (1) 통신위성 수출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2014년에 KT의 무궁화위성 3호의 매각을 들 수 있다. 대상살상무기와 관련된 주요 물자와 기술로서 핵무기에 이용되면 큰 위협이 되는 CBR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이를 발사하기 위한 발사체, 이의 대상이 되는 위성 등은 대표적인 통제 대상 전략물자 품목이다. KT는 대표적인 전략물자인 통신위성을 2011년에 홍콩ABS사에 매각하였으나,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수출한 것이 적발되면서 당시 KT 임원 2명에게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위성 매각에 대한 원상복귀를 명령받았지만 2016년 현재까지 재매입 등의 후속 처리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난황을 겪고 있다. 이는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를 비롯하여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업에 큰 타격을 입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위반하였는데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출이나 매각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 통신설비에 해당하므로 매각 시 주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34) 대외무역법 제57조.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우주물체의 소유권 변동 시 관계부처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KT는 이 같은 절차들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sup>35)</sup>

## (2) 포탄 생산 설비 수출

최근 무역업체 C사의 경우 2010년 9월에 정부의 허가 없이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760억 원 상당의 105mm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기술을 수출계약을 8건 체결하고 이후에 관련 생산 설비와 기술을 수출하였다. 2014년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협력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하였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의 계약 상대방인 미얀마 국방산업소의 폐인폐호 장군과 업체 아시아 메탈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이유로 미국에서 제재를 받고 있으며 포탄제조 기술이 언제라도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 전략물자의 경우 정부에 허가를 신청했다라도 불허될 품목이었던 것이다. 이에 검찰은 2014년 무역업체 C사 대표를 구속 기소하였고, C사 기술고문, 현지 공장책임자와 회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16년에 본 수출은 재판을 통해 유죄로 판결되었다.<sup>36)</sup> 2006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기업 대표는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을 수출한다고 정부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포탄제조 기술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2016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C사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기술고문에게는 벌금 5000만원, 현지 공장책임자 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C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sup>37)</sup>

본 사례는 전략물자 중에 물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산업용 설비를 수출하고 이를 포탄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제공하는 전략기술 이전으로 인한 불법 수출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전략물자 중 물품이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된 ‘물품의 개발, 제조, 사용 등과 관련된 기술’의 경우에도 전략물자에 해당되며 이번과 같이 기존 설비의 사용을 위해 “각종 도면 등 종전 기술 자료의 일부 수치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도 전략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불법 수출로 처벌 받은 사례가 되겠다.

이와 유사하게 지난 2002년 5월 대우중합기계와 대우인터내셔널은 정부의 허가

35) 최연진, “KT, 전략물자인 위성을 정부 승인없이 헐값 매각”, 한국일보, 2013.10.31(검색일: 2016.11.18.)

36) 고도예, “미얀마에 포탄기술 유출’ 방산업체 전 대표 징역형”, 헤럴드경제, 2016-05-26(검색일: 2016.11.18.)

37) 안대용, “미얀마에 포탄기술 불법수출 무역업체대표 1심서 징역”, 서울=뉴스1, 2016-05-26 (검색일: 2016.11.18.)



없이 미얀마 국방연구소와 105mm 곡사포용 고폭탄 등 포탄 6종의 생산설비·기술을 1억 3,300만 달러(약 1,400억원)에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들은 이후 2006년 5월까지 미얀마에 포탄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실제 포탄 생산이 가능하도록 도면과 공정도 등 대량의 기술 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6년 이 같은 무기 기술유출을 적발해 당시 대우인터내셔널 대표 등 7개 업체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설비기술을 결합한 플랫폼 방식으로 전략물자와 기술을 불법 수출한 것이 드러난 첫 사례였다.

## 2) 해외

해외 사례 중 일본 (주)미쓰도요(Mitutoyo Corp.)의 수출통제 위반 및 처벌에 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말레이시아로 3차원 정밀측정기를 불법 수출한 (주)미쓰도요에게 3년간 수출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루 앞서 도쿄 지방법원은 (주)미쓰도요 社와 기소된 4명의 전 임원들에게 벌금과 징역 형이 선고되었다.<sup>38)</sup>

미쓰도요 社가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3차원 정밀측정기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로서, 측정기 중 일부는 파키스탄의 칸(Khan) 박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두바이를 거쳐 리비아로 재이전 되었다. 이는 지난 2003년 IAEA 사찰단이 리비아의 핵시설에서 미쓰도요의 측정기를 발견하여 밝혀졌다.

미쓰도요 社는 측정기의 정밀도가 통제기준보다 낮아 보이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허가를 회피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 없이 약 1천대를 위법 수출하였다. 또한, 동사의 해외 현지법인과 판매 대리점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입한 측정기를 판매처와 용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판매 또는 재수출했던 것이다.

경제산업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미쓰도요가 제조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6개월(2007.7.3~2008.1.2)간 수출이 금지되었으며, CNC 측정기 및 그 부품에 대해 2년 6개월(2008.1.3~2010.7.2)간 추가로 수출이 금지되었다. 이와 별도로 도쿄 지방법원은 前 회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前 사장에게 징역 2년 8개월(집행유예 5년), 미쓰도요 社에 벌금 4,500만 엔 등을 선고했다.

한국 미쓰도요사 역시 이러한 본사의 처벌에 의해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등 글로벌 기업이었던 미쓰도요는 사업수익에 상당한 손실을 받은 것은 물론 전략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 일본 당국으로부터 요주의 기업으로 지목받게 됨은 물론 임직원의 형사 처벌로 경영상의 차질도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sup>39)</sup>

38)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례분석", 2009.

### 3. 소명비용과 납기 지연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하거나 우려통매자와 거래하는 등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수출 혐의로 인한 조사 및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까지 행정 부담도 상당하다.

대표적인 전략물자인 공작기계의 경우,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여러 기업이 경찰조사는 물론 법원의 재판 이후에야 무죄임이 입증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다.

공작기계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수출한 공작기계의 ISO 기준으로 측정된 위치 정밀도에 의해 판단하게 되나, ISO 기준으로 측정된 수치가 없거나, 이미 수출해버린 기계에 대한 수치를 증명할 길이 없을 때에 경찰 조사 끝에 법원에서 판결하기에 이르렀다. D사의 경우 동종 모델의 성능이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수출한 기계가 전략물자임이 확인될 수가 없어 무죄로 처리되었다.<sup>40)</sup>

그러나 D사는 처음 불법 수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출한 기계들의 전략물자 여부는 물론 수출기록 등에 대한 경찰의 자료 요구에 대응하는 것부터 자사 기계들의 전략물자 여부 판명을 위하여 자비로 공인 시험원에 의뢰하여 위치 정밀도 측정을 해야 하였으며, 또한 재판 관련한 비용 등을 상당히 부담하였고 전담 직원은 최소 2년간 본 사건에 투입하여야 하였다. 전략물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였다면 경찰 조사단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판 송치를 막았거나, 무역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내 문서 등을 제출하여 처음부터 불법수출 혐의를 벗게 되었을 것이다.

공작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는 E사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 의한 항소심을 치르고 난 후에야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E사는 자사 브로슈어에 CNC LATHE MACHINE 등 기계의 사양을 과장하여 표기하였다가 이를 전략물자로 오인 받아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결국 재판을 통해 소명하였다.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와 제도 이행에 대해 간과하고 있던 E사는 재판 과정에서 공인 시험원의 성적서 및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 품목 판정을 의뢰하여 자사의 제품이 사실은 전략물자의 기준 사양에 미달함을 증명하면서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였지만 자사 제품에 대한 전략물자 무역 리

39)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례분석", 2009.

40) 사건번호 2013노1154.

스크 관리가 없었 기 때문에 ‘이란’ 등의 우려국 등으로 수출시 전략물자 외에 수출 시 허가를 요하는 ‘상황허가’<sup>41)</sup> 위반을 범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

비슷한 사례로 상당히 많은 기업이 통관 지연으로 납기가 늦어지기도 한다. 관세청의 우려화물검색시스템에 의해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무작위로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받기도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전략물자 관련 제도를 모르고 있던 수출 기업들은 ‘사전판정서’나 ‘자가판정서’<sup>42)</sup>를 작성하여 제출하기까지 통관이 보류되어 납기지연의 위험에 직면하였다.

## V. 결 론

무역은 두 나라간의 격지 거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안보가 다시 주목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중에서 전략물자의 무역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과 연루되거나 주력 상품의 수출좌절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전략물자 중에도 대량살상무기에 간접적으로 사용되어 민감도가 높지 않고, 특정한 소수의 해외 기업에만 공급하는 회사의 경우 식별된 전략물자에 대해 당국의 ‘수출허가’ 신청 및 수출허가 득한 후 수출할 정도만으로도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관리의 실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품종을 불특정 다수에게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전략물자의 식별과 거래상대방의 우려거래자 여부 확인 및 우려용도로 전용 가능성, 수출품이 제대로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사후관리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위하여 세밀한 설계와 효과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자율준수체제나 AEO, ISO28000 모두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41)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나’지역(이란 등)으로 수출하는 자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및 사용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여 허가받는 것을 말함. 이 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2 상황허가(이란에 대해 공작기계 등이 지정되어 있음)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42)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류로서 ‘사전판정서’는 품목의 소관 부처에 따라 전략물자 관리원 등에서 발급되는 공인 서류이며, ‘자가판정서’는 기업이 스스로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서류로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서류이다.

PDCA를 내재하고 있다. 전략물자 및 확산에 관련된 우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전사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업무를 시행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 확인과 개선을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관리해야할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간단한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만으로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면, AEO는 이미 유럽 및 미국 등 무역 선진국을 중심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제도로서 그 실효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추천되고 있으나 전략물자의 리스크 관리 외에 경영 측면 등 전반을 다루고 있어 많은 기업에게 상당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ISO 28000 역시 모든 산업 형태의 기업에 적용할 수 있으나 물류보안을 목표로 하는 만큼 물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ISO 28000과 AEO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으로 그 소관 부처가 달라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이 두 제도가 모두 필요한 기업은 양쪽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순차적 도입보다 수월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기존의 수출 증진이라는 목표 실행에 몰입하여 수출 통제 위험 및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자율준수체제, AEO, ISO28000 등의 도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물자 무역 리스크를 사례를 통해 정의하고 이의 대표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인증제도가 기업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업종별로 제조·수출·운송 등 부분에서 상세한 전략물자 리스크 관리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고도예, “미안마에 포탄기술 유출’ 방산업체 진 대표 징역형”, 헤럴드경제, 2016.5.
- 관세청,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기업의 필수조건! AEO”, 2009.
- 부좌현 의원실, “전략물자 불법수출 5년간 182건”, 2015.
- 서현희, “남북경협에 서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북한대학교 대학원, 2010. 12.
- 심상렬·소단·주이화,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P)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12.
- 안대용, “미안마에 포탄기술 불법수출 무역업체대표 1심서 집유”, 서울=뉴스1, 2016.5.
- 오현석·양정호,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4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5.
- 이상옥,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9.
- 이상진,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목표모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6. 4.
- 이제홍,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 리스크 개발에 따른 수출보험상품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6.
- 이충배, “전략무역자율준수제도에서의 등급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1. 12.
- 이희용·강현재·김귀옥·여택동,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출기업에 대한 조사 분석”, 무역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7. 2.
-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례분석”, 2009.
- \_\_\_\_\_, “자율준수체제 가이드스”, 2009.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전략물자 수출입 동향 분석”, 2005.
- 정홍주·송용, “무역업의 리스크관리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8. 4
- 정홍주·성수남·최유미, “무역리스크관리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무역학회지 제37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12. 6.

지식경제부, “물류보안인증으로 무역장벽 낮춘다”, 2008. 5.

최연진, “KT, 전략물자인 위성을 정부 승인없이 헐값 매각”, 한국일보, 2013. 10.

최춘호. “전략물자 무역환경에 따른 글로벌기업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8.

經濟産業省, “先進企業から學ぶ事業リスクマネジメント實踐テキスト”, 2005.

湯淺壘道,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와 법제도”-최우용 옮김, 2008.

COSO, “Enterprise Risk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 Executive Summary”, September, 2004.

JISQ, “リスク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構築のための指針”, 日本規格協會, 2001.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http://www.yestrade.go.kr))

한국선급([www.krs.co.kr](http://www.krs.co.kr))

관세청([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ABSTRACT

###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of Strategic Materials

Kyung-Lyung LEE · Seoung-Taek LEE

Trade can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change of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remote transactions. Furthermore, in the circumstance of emphasizing the national security again, the importance of the risk management of special materials has been increasing. As it was noted at Chapter 4, significant results such as the threat of enterprises' sustainable growth can be occurred when companies are related to the unlawful export of strategic materials or experience discouragement of export of main products.

As the decision of strategic materials greatly depend on a specialized knowledge there is a possibility of misjudgement of strategic materials in terms of ordinary companies which is not accustomed to them. Furthermore risk management is more difficult due to the inclusion to the items of export license. To prepare such a risk of export of strategic materials, firstly, it should be checked to find whether counter traders are working in the industry which is not related to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econdly, an appropriate process shall be designed and operated for products to be safely delivered to the trade counter.

Therefore, our export enterprises have to introduce CP(Compliance Program), AEO or ISO28000 considering suitability for their actual situations not only to promote export and but also to avoid risk of export control and additional expenses. Through these appropriate processes, an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trade risk of strategic materials can be accomplished.

Keywords: Strategic Materials, Trade, Risk, Risk Management, Compliance Program